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 정관

제 정 : 1973년 3월 3일
승 인 : 1977년 10월 8일
일부개정 : 1981년 11월 20일
일부개정 : 1984년 12월 10일
일부개정 : 1988년 12월 6일
일부개정 : 1993년 5월 31일
일부개정 : 1995년 9월 28일
일부개정 : 1998년 12월 17일
일부개정 : 2001년 6월 22일
일부개정 : 2004년 11월 30일
일부개정 : 2006년 1월 12일
일부개정 : 2006년 12월 27일
일부개정 : 2007년 11월 13일
일부개정 : 2009년 3월 4일
일부개정 : 2010년 11월 30일
일부개정 : 2011년 12월 23일
일부개정 : 2014년 1월 10일
일부개정 : 2016년 3월 8일
일부개정 : 2016년 6월 30일
일부개정 : 2018년 6월 21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과학에 관한 기술을 발전 보급시키고 학문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치를 결정함)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과학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 및 연구
2. 응용기술 연구 및 발표
3. 회지 및 문헌 발간
4.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5. 견학 및 시찰
6. 표준 및 규격의 제정
7. 산학협동의 증진
8.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
9.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10. 전 각항 이외에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기 구)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사무국
- (2) 상임위원회
- (3) 소사이어터 및 연구회
- (4) 위원회
- (5) 지부
- (6) 부설기관

2. 각 기구별 운영에 따른 세칙은 본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정보과학분야 또는 그 인접과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정보과학의 연구 기관이나 응용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자, 또는 정보과학 학술 및 응용에 관하여 상당한 이력 또는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2. 종신회원 :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3. 학생회원 : 정보과학분야 또는 그 인접과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이 없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4. 주니어회원 : 다른 직업이 없는 고등학생으로 한다.

5.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로 한다.

6.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

7.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자료관리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본 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회원의 징계 및 배상) 1. 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150인 이내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20인 이내, 상임이사 50인 이내)
2. 협동부회장 및 협동이사 약간 명

3. 감 사 2인

제 12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선출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1. 차기회장은 선거규칙으로 정한 자격을 유지한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협동부회장과 협동이사는 신임회장이 정하여 차년도 회기 중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4.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5. 신임임원(부회장, 이사)의 1/5 이상은 현 임원으로부터 선출되어야 한다.

제 14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각 부회장의 업무범위는 회장이 정한다.
4.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부회장에 분담된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상임이사에 분담된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제 15 조(회장 및 차기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의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며, 차기회장의 신분을 유지한다.
3. 차기회장의 궐위 시에는 학술부회장, 총무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일 내에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제 16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적인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본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제 4 장 총 회

제 17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임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규칙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 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3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0 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 21 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2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칙변동에 관한 사항.

5.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소사이어티 및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3 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 조(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년 4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

제 26 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 27 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제12조에 따른 임원의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한다.

제 28 조(세입 세출 예산) 1.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정부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2.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29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0 조(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32 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규 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2018년 임원의 임기는 10개월로 한다.

2.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 7. 4.)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